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u>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u>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u>법 제35조제5항</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u>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u>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u>법 제36조제4항</u>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u>2천만원</u>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 ----- ----- ----- ----- ----- <u>10억원</u> -----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삭 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
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의 기
준: 2015년 1월 1일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경고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다)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때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때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법 제35조제2항제3호				

아니한 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경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 호 및 제3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 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비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 표 제2호 라목, 마
목, 자목 또는 차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게임제공업의 전부 또는 일
부(위반행위에 관련된 해당 게임물의 업무에 한함)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0000>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가. 일반기준

- (1)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영업정지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기준

처분대상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10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50,000원

2.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외의 영업

가. 일반기준

- (1)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제2호 나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영업정지기간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
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4)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목

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5) 연간 매출액은 해당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사업자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6)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해당 게임물의 총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한다.

(7)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매출액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사업자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허위의 정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8)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9)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기준

<u>업종 등급</u>	<u>연간매출액 (단위: 백만원)</u>	<u>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u>
<u>1</u>	<u>30 이하</u>	<u>5</u>
<u>2</u>	<u>30~47 이하</u>	<u>8</u>
<u>3</u>	<u>47~65 이하</u>	<u>12</u>
<u>4</u>	<u>65~85 이하</u>	<u>16</u>
<u>5</u>	<u>85~100 이하</u>	<u>20</u>
<u>6</u>	<u>100~153 이하</u>	<u>24</u>
<u>7</u>	<u>153~262 이하</u>	<u>39</u>
<u>8</u>	<u>262~460 이하</u>	<u>68</u>
<u>9</u>	<u>460~1,000 이하</u>	<u>132</u>
<u>10</u>	<u>1,000~1,470 이하</u>	<u>160</u>
<u>11</u>	<u>1,470~2,700 이하</u>	<u>250</u>

<u>12</u>	<u>2,700~4,000 이하</u>	<u>400</u>
<u>13</u>	<u>4,000~10,000 이하</u>	<u>700</u>
<u>14</u>	<u>10,000~30,000 이하</u>	<u>950</u>
<u>15</u>	<u>60,000~64,000 이하</u>	<u>1,500</u>
<u>16</u>	<u>64,000 초과</u>	<u>2,000</u>